

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라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
동의안을 공고합니다.

전북특별자치도지사

2026년 9월 29일

동의안 명	소관부서 (담당자)
전북특별자치도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	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(노주이, 063-280-2423)

※ 문의처 :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등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전북특별자치도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9. .

제출자 : 전북특별자치도지사
(건강증진과장)

1. 제안이유

- 가.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전북특별자치도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가 2026.12.31.일자로 위탁기간 만료예정으로,
- 나. 아토피·천식 교육 및 정보 제공,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·인증 등 관련 업무의 기획·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, 전문인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현 수탁기관인 전북대학교병원과 재계약하고자 함. 기존 수탁기관은 최초 위탁기간 동안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평가를 받았으며, 14개 시·군과 의 지역 네트워크 및 업무체계를 구축한 바 있어 「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조례」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동의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위탁사무 : 전북특별자치도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
- 위탁기간 : 2027. 1. 1. ~ 2031. 12. 31. (5년)
- 사업비 : 402백만원(국비 50%, 도비 50%) * 27년 국비 예산에 따라 변경 가능
- 운영인력 : 6명 【센터장 1(비상근), 전문인력 5】
- 시설위치 : 전북대학교병원(수탁기관 제공)

나. 사업내용

- 1) 아토피·천식 안심학교(유치원, 어린이집 포함) 운영 및 인증 지원
- 안심학교 학생 및 학부모 대상, 교사(일반교사 등) 알레르기질환 교육
 - 알레르기질환 관련 교육 및 홍보 자료 지원
 - 안심학교(유치원, 어린이집 포함) 대상 현장방문
 - 아토피·천식 안심학교 인증지원(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주관 아토피·천식 안심학교 인증 지원 및 서면·현장 평가 실시)

2)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

- 알레르기질환 전문가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보건인력(보건소 사업 담당자, 센터직원, 보건의료인 등) 대상 알레르기질환 교육 실시
- 지역사회 주민 대상 알레르기질환 기본 지식 및 올바른 관리방법 등 표준화된 교육 실시

3) 알레르기질환 교육·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등

- 알레르기질환 관련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표준 교육·홍보 자료 제작 및 배포(홈페이지, SNS, 지역 내 언론매체 등 활용)
- 지역사회 주민 대상 시·도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 역할 홍보

4) 지역사회 상담 서비스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

- 알레르기질환 상담 콜센터 운영
- 시·도 정책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
-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

다. 민간위탁 필요성

-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관리수준 향상 및 아토피·천식 예방관리 사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

3. 참고사항

가. 전북특별자치도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: 붙임 1

나. 관계 법령 : 붙임2

-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2항
-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1조

1 위탁추진 기본계획

□ 사업목적

-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관리 수준 향상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

□ 사업개요

- 법적근거
 - 가.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1조
 - 나.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6조, 제19조
 - 다. 「지역보건법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
- 사업기간 : 2027. 1. ~ 2031. 12.(5년간)
- 사업비 : 402백만원(국비 50%, 도비 50%) * '27년 국비 예산에 따라 변경 가능
- 운영방법 : 의료기관 대학교에 위탁운영
- 위탁운영기관 : 재계약

□ 위탁사유

- 알레르기질환 유병률 증가에 따른 인식 개선 필요
- 아토피·천식 질환에 대한 전문적 정보 제공 필요성 증대
-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시설, 의료기관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

□ 연도별 위탁비용

(단위 : 백만원)

연 도	위탁금	예산과목	세부 내역
2024년	400 (국 200, 도 200)	민간위탁금	인건비 288, 운영비 104, 여비 8
2025년	400 (국 200, 도 200)	민간위탁금	인건비 288, 운영비 104, 여비 8
2026년	402 (국 201, 도 201)	민간위탁금	인건비 289, 운영비 105, 여비 8

□ 추진상황 및 계획

-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수립 : '26. 9월
-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및 적정성 심의 : '26. 9월
- 민간위탁(재계약) 의회동의안 의결 : '26. 10월
-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: '26. 11월
- 위탁기관 선정 및 위·수탁 협약 체결 : '26. 12월
- 위탁기관 운영 : '27. 1월~

2 사업실적 및 사업성과

- 아토피·천식 안심학교 운영 지원
 - 안심학교 지정 확대를 체계적인 알레르기질환 교육, 응급상황에 대비 천식·아나필락시스 응급 키트 지원 등 대응 체계 강화
 - 실적 : 안심학교 지정 14개 시군 121개소, 응급키트 지원 25건
-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
 - 사업관련 대상자별 전문교육 실시로 알레르기질환의 이해 및 인식향상 등 관리 역량 강화
 - 실적 : 보건소 담당자 및 보건·보육교사 교육 3회, 보건의료인 및 교육정보센터 직원 교육 18회, 지역주민 대상 교육 8회
- 교육·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
 - 각종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관심 유발 및 올바른 정보 안내
 - 실적 :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14종, 알레르기질환 관련 올바른 정보 제공 285건, 다양한 매체 활용 센터 홍보 6종
- 지역사회 상담서비스 및 지역네트워크 구축
 - 전화, 온·오프라인을 통한 지역사회 상담서비스 제공, 알레르기전문가 그룹, 관련 학·협회, 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성과대회를 통해 우수사례 공유
 - 실적 : 지역사회 상담서비스 122건,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10회

3 성과평가결과

□ 평가결과

연 도	공통지표	성과지표	합 계	등 급
2025년 ('24년 추진사업)	29.80	64.70	94.50	S
2026년 ('25년 추진사업)	28.20	65.75	93.95	가

□ 총 평

- ('25년) 종합점수 94.50으로 S등급(탁월)을 획득하였으며, 안심학교 학생·학부모 대상 알레르기질환 교육 실시, 보건·보육교사·보건소 사업담당자 교육,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주요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등 사업 운영이 우수성이 확인됨.
- ('26년) 종합점수 93.95으로 가등급을 획득하였으며, 주요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함. 조직·인력체계에서 센터장-사무담당 인력 직위별로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분장되어 있고, 예산 수립 및 집행 관리에서 적정성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수행 역량이 확인됨.

4 정산결과

(단위:백만원)

연 도	예 산 액			집 행 액			집행잔액		
	계	국비	도비	계	국비	도비	계	국비	도비
2024년	400	200	200	400	200	200	0	0	0
2025년	400	200	200	400	200	200	0	0	0

5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

□ 2024년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

- 점검일자 : 2024. 2. 22.(목)
- 점 검 자 : 출산지원팀 2명
- 점검내용 : 예산 적절성 및 종사자 관리 운영, 물품관리, 위원회(연 3회) 개최 유무, 사업 추진실적 점검 등
- 점검결과 :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군 협력체계 강화 당부

□ 2025년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

- 점검일자 : 2025. 7. 3.(목)
- 점 검 자 : 출산지원팀 2명
- 점검내용 : 예산 적절성 및 종사자 관리 운영, 물품관리, 위원회(연 3회) 개최 유무, 사업 추진실적 점검 등
- 점검결과 : 홍보 및 교육 실적 미흡하여 하반기 사업추진 독려

□ 2026년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

- 점검일자 : 2026. 6. 26.(금)
- 점 검 자 : 출산지원팀 2명
- 점검내용 : 예산 적절성 및 종사자 관리 운영, 물품관리, 위원회(연 3회) 개최 유무, 사업 추진실적 점검 등
- 점검결과 : 보조금 집행 적절 이행 확인

□ 「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」 제4조

- 「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(재위탁·재계약 포함)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□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1조

-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1조(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·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(慢性疾患)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□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6조, 제19조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6조(건강친화 환경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,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9조(건강증진사업 등)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.
 1.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
 2. 영양관리
 3. 신체활동장려
 4. 구강건강의 관리
 5.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
 6.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·연구
 7.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

□ 「지역보건법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

- 「지역보건법」 제30조(권한의 위임 등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

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에 위탁하거나,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,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(實費)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○ 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 제23조(업무의 위탁 및 대행)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- 1.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
 - 2.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
 - 3. 법 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
 - 4.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, 실험 또는 검사 업무
 - 5.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
-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.
- 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비용보조, 실비보조,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대행하게 한다.